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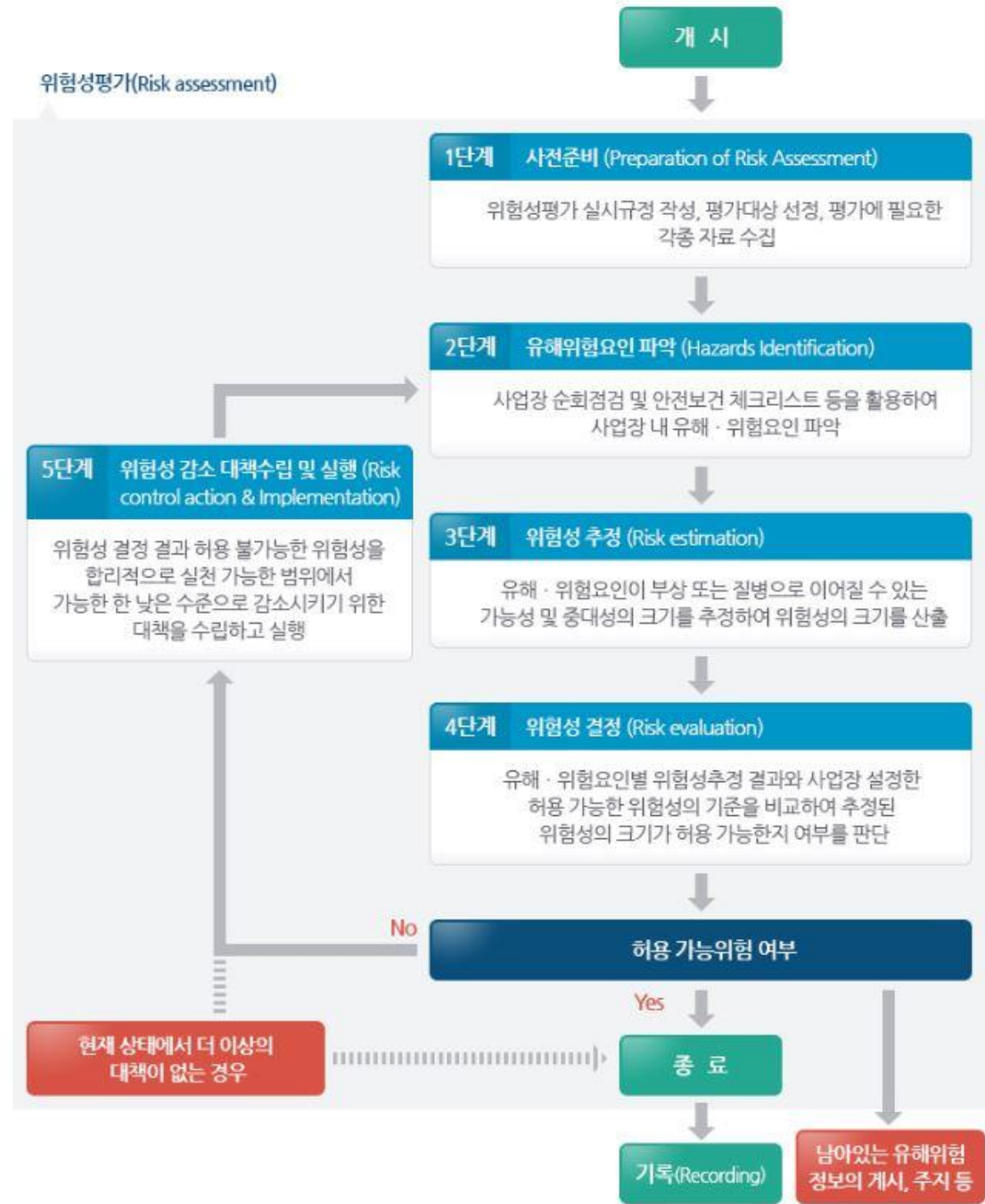
◦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❶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❷ 관리 감독자 ❸ 안전 관리자·보건 관리자 ❹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위험성추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위험성평가 교육안내

위험성평가 교육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진행 절차 등을 알려주고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과 개선대책 수립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한 사업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가까운 공단이나 민간 교육 기관 등을 통해 교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 : 사업주 / 평가 담당자

▶ **교육과정** : 사업주 교육(2시간), 평가담당자 교육(제조업, 건설업 - 16시간, 이외 업종 - 8시간)

▶ **교육기관** : 공단, 민간기관(공단에서 지정된 기관)
※ 기타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육비용** : 민간기관 교육의 경우 현금 또는 비환금과정으로 운영되며 공단으로 교육을 신청한 경우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문의안내** : 상단의 교육기관 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 50명 미만(건설업 120억 미만)사업장은 공단에 컨설팅 신청가능(무상지원)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는?



- ▶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 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서 무상지원]
 * 민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도 됨.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 1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은 징수법에 의거 산재예방요율 적용)
- 2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 3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4 위험성평가 인정시 클린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위험성평가 컨설팅이란?

-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지원활동을 말합니다.
-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지도사, 기술사 등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컨설팅 기관 안내

-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지도사, 기술사 등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역별/전공별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컨설팅을 받으면 됩니다.

| 컨설팅 기관 안내

- 근로자 수 50명(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 120억 원)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 공단의 지원이 꼭 필요한 일부 사업장에 한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정(현장) 심사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수준 향상을 위해 컨설팅을 병행 지원합니다.
※ 해당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일부(30~50%)에 대해서만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

강원지역 위험성평가 관련 문의처

강원지사	강원도 춘천시 경춘대로 2370 (온익동 513) 교직원공제회관 2층	033)815-1058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교동) 정관빌딩 3층	033)820-2552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